



음료용기 표시에 대해

Beverage Labeling

浦澤正之 / 아사히음료 (주) 품질보증부

1. 서두

포장 용기에 들어가는 가공 식품은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품으로써 유통하고, 소비자가 구입·소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용기·맛의 특성이나 유통 형태에 따라 오해를 주지 않도록 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으로써 표시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업계 또는 기업의 자주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음료용기·포장의 표시에 대해 업계 특유의 기준·방식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1. 음료 표시에 관한 법령·업계기준

1-1. 법령·업계기준의 개요

1-1-1. 법령

① 식품위생법 : 관할 '후생노동성'

명칭, 품질 보증기한(유통기한), 제조자 주소 및 이름, 첨가물,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것, 유전자 변형인것, 보존방법 등 음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②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기초해서 JAS 규격·품질표시기준 : 관할 '농림수산성' 소비자를 위한 품질 표시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농림 물자에 대해 품질과 표시의 기준을 정한 것이 JAS 규격(임의)이다.

여기에 합치한 제품에는 JA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음료에 관해서는 '과실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토마토 가공품, 당근 주스류' 등에 JAS 규격이 있다.

가공식품 전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시의 기준에는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한(품질보증기한), 보존방법, 제조자 주소 및 이름, 특색 있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유전자 변형인 것' 등을 일괄해서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개별 JAS 규격이 있는 카테고리에는 관련된 품질 표시 기준이 있고 명칭의 정의나 원재료의 기재 순서 등 식품위생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있다. 이 개별 품질 표시 기준은 JAS의 모든 규격을 엄수해야 한다.



③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에게 실제보다도 우수한 것처럼 오해를 주는 부당표시를 규제하는 것이다. 산지의 허위 표시 등이 부당표시에 해당한다.

④ 영양개선법 : 관할 '후생노동성' 국민의 영양개선의 관점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도록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 표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영양 성분이나 열량을 표시할 경우,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의 5항목은 이 순서로 표시하고 또한 '칼슘 풍부'나 '저 칼로리' 등으로 강조해서 표시하는 경우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영양 성분이나 열량을 강조할 경우만 표시 의무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의 영양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표시 의무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영양 성분 표시를 하고 있다.

⑤ 계량법 : 관할 '경제산업성'

계량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음료에 대해서는 '그램' 또는 '리터'를 계량 단위로 하고 표시하고 있는 내용량과 실제량과의 차이(오차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단, 실제량이 적을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내용량 표시 500ml의 음료인 경우에는 실제량과의 차이는 -2% 정도다.

⑥ 약사법 : 관할 '후생노동성'

의약품에 관한 법률인데, 식품이면서도 건강음료의 상품 설명 표시에 의약품적인 효과·효능이 있다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의약품으로써의 승인이나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광고나 판매를 했다고 판단해서 약사법에 저촉된다.

식물 섬유나 올리고 당 등을 배합하고 정장효과를 기대한 건강음료에서도 '배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표현은 의약품적인 효과·효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다.

단, 식품에서 예외로 보건 기능 식품(후생노동성의 인가를 받은 특정보건용 식품 및 규격기준에 적합한 영양기능식품)이면 허가된 범위 내에서 효과·효능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유효이용촉진법) : 관할 '경제산업성' 용기포장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종이제 용기포장, PET 병, 스틸 캔, 알루미늄 캔에 대한 식별 마크 양식을 정하고 사업자에 대해서 식별 표시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⑧ 제조물 책임법(PL법) : 관할 '내각부'

인적, 물적 손해를 초래하는 상품의 결함에 대해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설계 및 제조에 따른 결함 뿐만 아니라 표시에 대해서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절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⑨ 상표법 : 관할 '특허청'

상표를 보호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권리 범위를 확립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상품을 상시할 경우 사전에 상품의 이름에 관해 상표 조사를 실시하고 타사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⑩ 저작권법 : 관할 '문화청'

저작권은 모든 창작물(저작물)의 작자에 대해

[사진 1] 음료의 부위 명칭



부여되고 있는 권리이며 이것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고, 권리 내용의 행위를 실시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포장 디자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⑪ 부정 경쟁 방지법 : 관할 '경제산업성'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타사의 히트 상품과 유사한 표시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만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1-2. 업계기준

① 포장 용기 식별 표시 마크 가이드라인 : 관할 '전국청량음료공업회' 식별 표시 마크 자체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소재의 부위 명칭 통일 등 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어 있다.

음료의 부위 명칭으로는 '뚜껑, 보틀, 걸상자, 라벨, 포장종이, 외장 필름, 덮개, 걸 덮개, 본체 (종이 용기에 해당한다), 병마개, 빨대' 등으로 통일되어 있다(사진 1).

②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업계 내에서 상호 감시하고, 부당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단체가 공정거래위

원회의 인정을 받아서 표시에 관해 정한 자주기 준이다. 음료에 관한 것으로는 '음용유, 발효유, 유산균 음료, 살균 유산균 음료, 초콜릿 이용식품, 과실음료 및 커피 음료, 토마토 가공식품, 두유류'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과실음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서는 과즙 5% 미만 상품은 '무과즙'으로 표시하거나 과즙 함유량을 1%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안화된 그림만 인정되고 있다(사진 2).

한편, 과즙 100% 주스에서는 사실적인 그림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과즙이 농축 환원한 것이거나 스트레이트 과즙을 사용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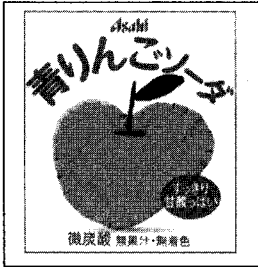
③ 품질 표시 가이드라인 : 관할 '농림수산성'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아직 식품으로써의 성질, 평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타입의 식품에 대한 정의와 필요한 표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음료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미네랄 워터류, 우롱차 음료, 홍차 음료'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롱차 음료에서는 '철관음 사용' 등 특정 차잎이 주원료인 것을 강조할 경우에는 해당 차잎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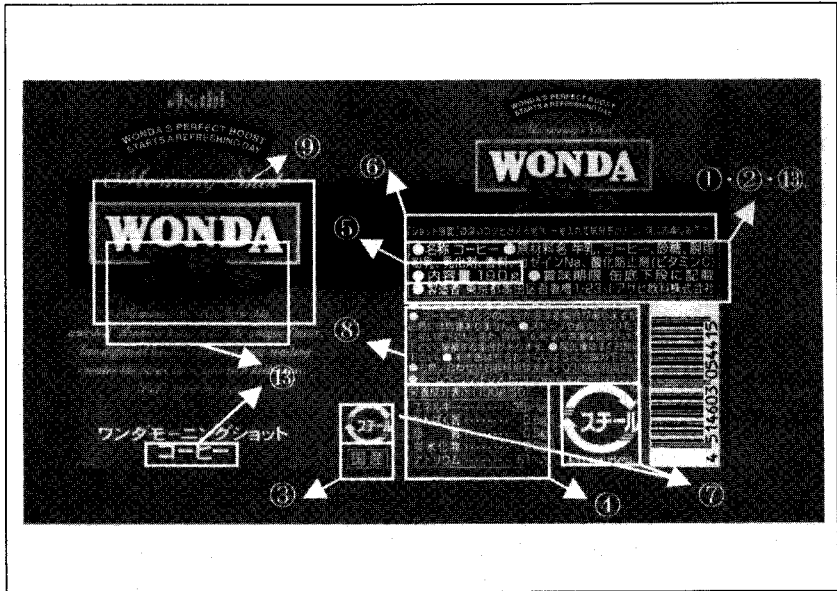
[사진 2] 과실음료표시



[사진 3] 과즙100%쥬스표시



[사진 4] 캔커피에 적용된 음료표시사항



1-2. 음료 사례 종합

앞의 1)과 2)에서 소개한 법령, 업계 기준이 주로 관련된 표시 사항에 대해 캔 커피의 전개도를 예로 들어 [사진 4]에 소개했다.

2. 주의표시에 대해

고품질이고 안전한 상품의 제공은 식품 메이커의 책무이다.

음료는 자동판매기나 편의점을 비롯하여 언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층을 타겟으로 한 친근한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조건, 음용조건을 상정해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위험의 크기를 고려한 후 위험의 제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범위에서 설계변경

이 어려운 경우 표시로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가 있다.

2-1. 주의 표시 주의점

① 표시 사항 선택

무엇이든 주의, 경고한다는 것은 피한다. 사실의 주의, 경고의 효과를 희석시킨다.

② 표시 자체에 대해

- 단문이고 간결하게 한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한다.
- 쉬운 단어의 사용(어려운 한자는 피한다.)
- 눈에 띄게 한다(글씨체, 크기, 장소 등).

2-2. 음료의 주의 표시에

[표 1]에 상품의 주의 표시로써 용기마다 특징적인 것을 예시했다.

3. 음료 표시의 배치상 주의점

상품의 디자인과 필요한 표시 항목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하는데 다음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참고로 서술한다.

3-1. 바코드 배치 위치

PET 라벨에 표시하는 바코드는 바코드의 배치에 따라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코드 배치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6캔 멀티팩 상품을 토트백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장 윗면에 멀티팩 판매용 바코드를 표시해두는 것이 점포에서 판매시의 작업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3-2. 상품명 배치

진열대에 배열할 때에도 상품명 알 수 있고, 디자인 뒷면에도 상품명 표시하는 것이 좋다.

3-3. 텍 싹을 상품에 부착할 경우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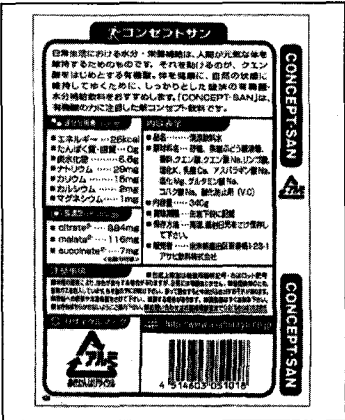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캠페인으로써 용기 응모 싹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표 1] 용기별 상품의 주의 표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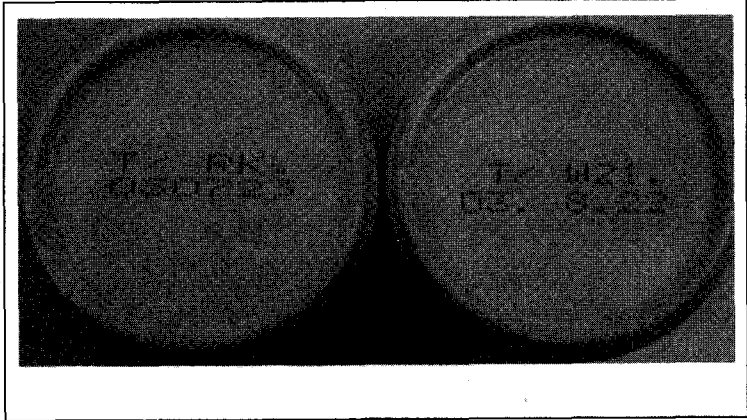
용기(특성)	상품 예	주의표시 예	비 고
캔(질소충전)		· 흔들지 말고 개봉하세요. 품질유지를 위해 질소가스를 주입했으므로 내용물이 흐를수도 있습니다.	내용물이 흘러서 의류, 서류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 환기
HOT판매가능 PET보틀		· 용기를 전자렌지에 넣지 마시오. · 내용물이 뜨거워지므로 화상에 주의하세요. · 오렌지 뚜껑은 가온기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표시입니다.	가온한 PET보틀 음료의 판매, 음용시의 주의사항을 이해시키기 위해(신규 용기 · 판매형태)
유리병		· 병을 조심히 다루십시오. · 개폐시에 뚜껑 절단부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깨진 병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 환기
보틀		· 용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 개폐시의 뚜껑 절단부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의 음용시의 주의사항을 이해시키기 위해(신규 용기)
종이		· 측면을 잡으면 내용물이 흘러나오므로 모서리를 잡으세요.	내용물이 흘러서 의류, 서류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 환기



(사진 5) 표시부분을 강조한 라벨



(사진 6) 유통기한표시에



이런 경우 법정 표시나 주의 표시, 바코드 등이 셀에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셀의 부착 위치를 고정할 수 없을 경우 적어도 셀의 세로 폭은 용기 원주상에 중요한 표시가 겹치지 않는 표시 구성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4. 보기 쉽고 알기 쉬운 음료 표시

4-1. 글씨 색

음료 색과 디자인의 배색에 따라서는 표시 내용이 읽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와 배경의 대조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적색과 녹색, 황색과 황녹색의 조합 등 색맹인 사람이 보기 어려운 색 사용은 피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2. 문자 크기

(사진 5)에 나타난 포장(알루미늄 캔 340g 전개도)는 기존 제품보다 표시 부분을 보기 쉽

고 큰 글자로 디자인 한 상품 예이다.

일괄 표시나 영양 성분 표시 등의 법정 표시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 크기보다도 크게 기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글씨가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호감이 갑니다. 이제부터 보기 쉽고 알기 쉬운 표시로 해 주세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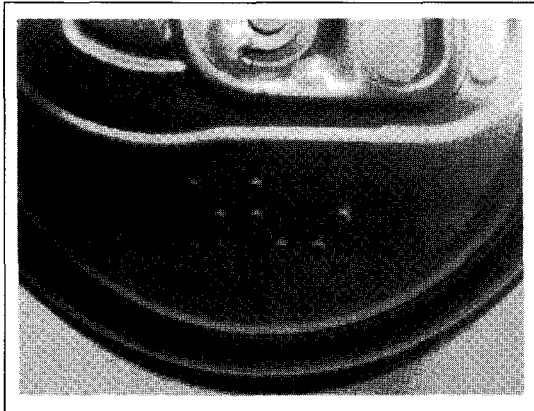
4-3. 표시방법

음료업계에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 월, 일'의 숫자로 표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사진 6)좌측.

유통기한의 기재가 식품위생법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도 이 표시방법을 사용하지만 최근 고객들로부터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 읽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년, 월, 일' 사이에 ':'을 넣은 결과(사진 6) 우측) 그 상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문의가 격감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2002년

〔사진 7〕 캔 뚜껑의 점자 표시



〔사진 8〕 미성년자 오음방지 표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을 넣은 유통기한 표시로 바꾸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4-1. 기타 참고(알콜 음료의 표시 예)

지금까지는 청량음료의 표시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알콜 음료의 표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 (주업법), '공정경쟁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한 표시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한다.

① 캔 뚜껑의 점자

시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알콜 음료와 청량 음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캔 알콜 음료의 뚜껑에는 '술'이라는 점자를 자주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품이 많다〔사진 7〕.

② 미성년자의 오음방지

과실이 그려진 과실주등은 청량 음료와 혼동해서 어린아이들이 오음하지 않도록 '저알콜 도

수 리크루 류 등의 술 마크의 표시등에 관한 자주기준' (일본양주주조조합)에 기초해서 '술' 마크를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의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사진 8〕.

5. 종합

상품 어필과 법령 엄수는 음료의 표시로써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함께 알기 쉬운 표시에 대한 배려도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상품의 판매, 선택, 음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유통, 판매, 회사의 입장에서 서서 보기 쉽고, 알기 쉬운 표시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품의 매력,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한 음료업계에 한정되지 않고 식품 표시 전체의 신뢰를 향상시켜 가기 위해서도 정보 개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㉒